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 등 생명공학 분야 지원 강화>

■ 박대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538호)

2024.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임 명 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 등(안 제11조의2 신설)	2
2. 공동·융복합연구의 촉진(안 제12조)	7
3. 국제협력의 추진(안 제13조)	10
4. 생명공학의 산업적 응용촉진에 대한 지원(안 제15조)	14
5. 전문인력의 양성 및 표준화추진(안 제18조 및 제20조의2)	16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대출의원 등 108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6. 17.

다. 회부연월일 : 2024. 6.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명공학 분야는 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등 새로운 생명공학 기술이 등장하면서, 이 같은 기술에 대한 전략적 지원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에서 국내외 생명공학 기술발전의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나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생명공학 관련 공동·융복합연구,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표준화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생명공학을 효율적으로 육성·발전시키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제3항, 제15조제2항, 제18조제2항·제3항 및 제20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 등(안 제11조의2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11조의2(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공학 연구 및 기술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라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u> <u>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관련 주요 정책과의 부합성</u> <u>2. 기술개발 난이도의 적절성</u> <u>3. 신기술 및 신산업 창출 기여와 연관산업으로의 파급성</u> <u>4. 국가안보 측면에서의 기술</u>

현행	개정안
	<u>확보 필요성</u> <u>5. 그 밖에 심의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u> <u>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변경 또는 지정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또는 지정 해제할 수 있다.</u> <u>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제3항에 따른 변경이나 지정 해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u> <u>⑤ 제1항에 따른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 방법, 지원 범위 및 내용, 제3항에 따른 변경절차 및 지정 해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나. 검토의견

생명공학은 “각종 생물체의 생물학적 시스템, 생체, 유전체 또는 그들로부터 유래되는 물질·정보를 연구·활용하는 학문과 기술”로 생명공학기술의 범위가 넓고 국가의 예산과 인력은 한정적이므로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여 별도로 육성하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안 제11조의2제2항은 각 호에서 ‘유망 생명공학기술’로 지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 및 제4호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 ‘유망 생명공학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이 일부 중복될 것으로 보임.

<유망 생명공학기술 지정 요건과 국가전략기술 선정 요건 비교>

‘유망 생명공학기술’ 지정 시 고려사항	‘국가전략기술’ 선정 시 고려사항 ¹⁾
(3호)신기술 및 신산업 창출 기여와 연관산업으로의 파급성	(1호)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 (3호)신기술 및 신산업 창출 기여도
(4호)국가안보 측면에서의 기술 확보 필요성	(2호)외교·통상 및 국가안보 측면의 전략적 활용가능성

1)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국가전략기술의 선정·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하여 법률에서 구체적인 지원 체계를 규율하고 있는 반면에 개정안은 ‘유망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지원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같은 기술이라도 ‘유망 생명공학기술’로 지정하는 것보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것이 더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외교·안보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²⁾하고 이를 집중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 현재 ‘첨단 바이오’ 분야가 12대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되었고, ‘합성생물학, 유전자·세포 치료, 감염병 백신·치료, 디지털 헬스데이터 분석·활용 기술’

1.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

2. 외교·통상 및 국가안보 측면의 전략적 활용가능성

3. 신기술 및 신산업 창출 기여도

4.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국내외 특허·기술 동향

5.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선정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변경 또는 선정 해제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의 선정·변경 또는 선정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의 선정, 제3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의 변경이나 선정 해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의 선정절차, 제3항에 따른 변경절차 및 선정 해제절차,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의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전략기술”이란 외교·안보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술을 말한다.

이 50개 중점기술로 선정되어 같은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음.

둘째, 안 제11조의2제2항제2호는 기술개발 난이도의 적절성을 ‘유망 생명공학기술’ 지정 시 고려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가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기술개발에 성공할 확률이 너무 낮은 경우에는 지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라면,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과 같이 규정하는 것이 더 명확할 것으로 보임.

셋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심의·결정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7조제2항에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³⁾

3) 「생명공학육성법」

제7조(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① 기본계획 및 생명공학 기술 개발·산업화 촉진에 관한 세부 전략·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 및 조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하에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및 그 조정에 관한 사항
2.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중요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생명공학 관련 주요 제도의 수립과 정비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4. 삭제
5. 삭제
6. 「뇌연구 촉진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의 수립·변경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의 수립 및 그 집행을 조정
7. 「뇌연구 촉진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뇌연구 투자 확대계획에 관한 사항
8. 삭제
9. 삭제
10. 그 밖에 생명공학육성과 뇌연구 촉진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학계·연구기관·의료기관 또는 산업계에 종사하는 생명공학 관계자 및 생명윤리 전문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2항에 따른 심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심의회가 위임한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그 밖에 심의회와 실무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융복합연구의 촉진(안 제12조)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생명공학연구 및 기술개발이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공동·융복합연구의 촉진) ① (생략) <u><신설></u>	제12조(공동·융복합연구의 촉진) ① (현행과 같음) ②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공학에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과 같은 첨단기술을 결합하는 등의 기술 간 융복합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u> 1. <u>생명공학 융복합연구 관련 연구개발 사업</u> 2. <u>생명공학 융복합연구 관련 연구장비·시설 등 인프라 확충</u> 3. <u>생명공학 융복합연구 관련 기술혁신 성과의 실용화 지원</u> 4. <u>생명공학 융복합연구 전문인력 양성</u> 5. <u>그 밖에 생명공학 융복합연구</u>

현행	개정안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융복합 연구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 ----- -----.

나. 검토의견

최근 생명공학 분야에서 인공지능이나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후보 물질을 발굴하거나 실험 횟수를 높여 연구기간을 단축하는 등 성과를 내는 사례가 있어 생명공학 연구 및 기술개발에 첨단기술 활용을 장려할 필요성은 큰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안 제12조제2항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첨단기술’이라는 용어는 그 범위가 정해져있지 않아 법률의 명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생명공학에 결합하는 기술을 굳이 첨단기술로 한정할 필요도 없는 것으로 보임.

「뇌연구 촉진법」 제2조의 ‘뇌융합기술’의 정의⁴⁾를 참고하여 ‘첨

4) 「뇌연구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의4. “뇌융합기술”이란 정보통신기술 또는 나노기술 등 다른 연구분야 기술을 뇌과학, 뇌의학, 뇌공학 등에 융합하거나 복합한 기술로서 뇌질환의 진단, 뇌신경의 물리적·시각적·감각적 자극을 통한 뇌질환의 치료·예방, 뇌기능 활성화·활용 등에 적용되는 기술을 말한다.

단기술’ 대신 ‘다른 연구분야 기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둘째, 안 제12조제2항제3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생명공학 융복합연구 관련 기술혁신 성과의 실용화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성과의 실용화’라는 표현은 다른 법률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기는 하나, 이 법은 제5조 및 제15조에서 ‘사업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업화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셋째, 현행 제12조제1항⁵⁾은 ‘학계·연구기관·의료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융복합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산·학·연·병의 협력을 통한 공동연구 촉진에 더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임.

안 제12조제2항에서 융복합연구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제12조제1항은 공동연구에 관한 규정으로 수정하여 체계를 정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5) 「생명공학육성법」

제12조(공동·융복합연구의 촉진) ① 정부는 생명공학연구 및 기술개발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학계·연구기관·의료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융복합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융복합연구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제협력의 추진(안 제13조)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제협력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13조(국제협력의 추진) (생략) <u><신설></u>	제13조(국제협력의 추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 추진을 위하여 외국의 정부, 생명공학 관련 국제기구와 연구개발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사업에 우리나라의 기업·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 및 생명공학 관련 기관·단체 등을 공동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u> 1. <u>생명공학에 관한 국제 공동 연구</u> 2. <u>생명공학에 관한 기술 및 인력 교류</u>

현행	개정안
<신설>	3. 생명공학에 관한 정보·지식 교류 및 공동활용 촉진 4. 생명공학에 관한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구축·운영에 대한 기술 협력 5. 생명공학에 관한 공동연구센터 등 협력거점 구축 및 지원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업·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 및 생명공학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현행 제13조는 생명공학의 수준 향상과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국제협력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하고 기업·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 등 민간의 참여 및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생명공학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안 제13조제2항은 생명공학 분야의 국제협력 추진의 주체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만을 명시하고 있는데 주체를 정부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제4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23~'32)은 바이오 안보 대응, 국제공동연구 등 네트워크 강화의 소관부처로 관계부처 모두를 명시하고 있고, 글로벌 임상지원이나 탄소중립·난치질환 치료 등 글로벌 난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의 주체는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이 될 수 있음.

둘째, 안 제13조제2항은 국제협력의 대상을 ①외국의 정부, ②생명공학 관련 국제기구, ③생명공학 관련 연구개발 기관·단체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외국의 연구개발 기관·단체의 경우 생명공학 관련 기관·단체로 한정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임.

국제협력을 통한 성과가 생명공학과 관련될 필요는 있지만 최근 생명공학 분야와 다른 기술분야를 결합한 융복합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참여기관이 모두 생명공학 관련 기관일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임.

셋째, 안 제13조제2항 후단의 취지는 우리나라의 기업·대학·연

구기관·의료기관 및 생명공학 관련 기관·단체 등이 국제협력을 위한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참여를 허락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는데, 문언상 기업·대학 등이 참여를 원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참여하게 할수 있다고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4. 생명공학의 산업적 응용촉진에 대한 지원(안 제15조)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정부가 생명공학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생명공학의 산업적 응용촉진에 대한 지원) (생략)	제15조(생명공학의 산업적 응용촉진에 대한 지원)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설></u>	② 정부는 생명공학 관련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명공학 성과의 실증, 시제품(試製品)의 개발·제작 및 설비투자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개발된 생명공학 관련 기술·제품에 관한 교육과 홍보
	3. 그 밖에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나. 검토의견

생명공학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실제 산업에 적용하여 활용함으로써 국내 산업을 육성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사업화 촉진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15조제1항 각호6)에서 산업적 응용 촉진을 위한 지원시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생명공학 관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제4호)이나, 생명공학 관련 신기술제품의 생산 및 판매 촉진(제7호) 등과 안 제15조제2항의 내용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6) 「생명공학육성법」

제15조(생명공학의 산업적 응용촉진에 대한 지원) 정부는 생명공학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그 결과의 산업적 응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생명공학의 산업적 응용을 위한 후속 연구개발
2. 생명공학과 다른 분야의 융복합 연구
3. 생명공학 유망범용기술(생명공학 관련 제품, 서비스 등의 생산 및 이용에 범용적으로 활용되는 기반기술을 말한다)의 연구 및 서비스 개발
4. 생명공학 관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5. 생명공학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
6. 생명공학 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지역거점 구축
7. 생명공학 관련 신기술제품의 생산 및 판매 촉진
8. 그 밖에 생명공학의 산업적 응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

5. 전문인력의 양성 및 표준화추진(안 제18조 및 제20조의2)

가. 개정안의 내용

안 제18조는 생명공학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 수립과 사업 추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0조의2는 정부가 생명공학기술의 표준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생략) <u><신설></u>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에 관한 인력수급전망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생명공학 인력양성 계획 및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계,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명공학 관련 데이터의 연
<u><신설></u>	

현행	개정안
<신 설>	계·제공 및 공동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2. 생명공학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사업 3. 국내 생명공학 관련 인력의 해외 연구기관 및 생명공학 관련 기관·단체로의 파견 4. 생명공학 관련 해외 전문인력 유치 지원 5. 그 밖에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0조의2(표준화 추진) ① 정부는 생명공학기술의 개발·이전·확산과 산업화 촉진 및 관련 기술 간의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생명공학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생명공학기술의 표준 개발·보급 및 확산.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현행	개정안
	<u>2. 생명공학기술 표준화 관련 연구개발 및 정보 조사</u> <u>3. 생명공학기술 표준화에 관한 국제협력</u> <u>4. 그 밖에 생명공학기술 표준화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u>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나. 검토의견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관련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및 확보하고 관련 표준화 개발을 통하여 기술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다만,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안 제18조제1항(현행 제18조)은 정부가 생명공학 인력 양성 계획을 세우고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안 제18조제2항은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에 관한 인력수급전망을 수립하고 이를 생명공학 인력 양성계획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

한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안 제18조제1항(현행 제18조)에 따른 생명공학 인력 양성 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않고, 현행 제5조에 따른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있음. 따라서 안 제18조제2항에 따라 인력수급전망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둘째, 안 제18조제2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2조제3호의 ‘관계중앙행정기관’⁷⁾의 장과 다른 의미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면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셋째, 안 제18조제3항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1호의 ‘생명공학 관련 데이터의 연계·제공 및 공동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은 생명공학 관련 데이터를 포함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⁸⁾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법에서 별도

7)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관계중앙행정기관”이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질병관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을 말한다.

8)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명연구자원”이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이 되는 자원으로 연구 또는 산업적으로 실질적, 잠재적 가치가 있는 동물, 식물, 미생물, 인체유래 연구자원 등 다양한 생물체의 실물(實物, 유전자원을 포함한다)과 관련 정보 등을 말한다.

로 규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임.

또한, 안 제3호 및 제4호는 안 제13조(국제협력의 추진)의 지원 내용과 중복되므로 조문을 통합·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특히, 제4호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은 제18조의 조제목인 ‘전문인력의 양성’보다는 ‘인재확보’ 또는 ‘국제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목적에 더 가까운 내용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227

2. ~ 4. (생략)

제7조(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생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의 기본방향
2. 생명연구자원의 조사, 연구, 개발 및 확보
3. 생명연구자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
4. 생명연구자원 관련 인프라의 구축
5. 생명연구자원 정보유통체계 구축
6.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을 위한 투자의 확대
7. 생명연구자원 전문인력 양성
8. 그 밖에 생명연구자원 분야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③ ~ ⑥ (생략)

제15조(전문인력의 양성) 정부는 생명연구자원의 효과적인 확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생명연구자원 분야의 중·장기 전문인력 양성
2.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의 확보 및 보급 지원